

1. 개정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자격 미비 확인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확인 주기 및 방법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사업자(영업점 포함)는 매월 1회 이상 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된 이후 배송 업무를 하도록 관리 의무화

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의무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면허 보유·정지·취소 등 분기별 시스템 이용 실적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다.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관련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체계적인 운전자격 관리를 위해 영업점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를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신청서 및 이용 실적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한 이용 신청서 및 이용 실적 제출 의무화에 따른 이용 실적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운전
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하되, 운전자격 확인이 완료된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배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2
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용 실
적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 운전자격확인시스
템 이용 신청 및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 등 업무를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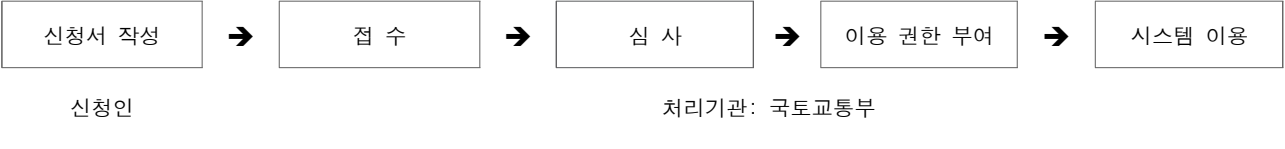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일반 현황	업체명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이용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분기별 이용 실적	기 간	면허 정상(명)	면허 정지(명)	면허 취소(명)	계(명)
	____년__월				
	____년__월				
	____년__월				
	계(명)				
연간 이용 실적	기 간	면허 정상(명)	면허 정지(명)	면허 취소(명)	계(명)
	____년 1분기				
	____년 2분기				
	____년 3분기				
	____년 4분기				
	계(명)	- 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의 운전자격 확인 업무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는 이 영 시행일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날 가운데 늦게 도래한 날의 60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u> <u>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 하되, 운전자격 확인이 완료된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배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u> <u>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용 실적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영업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 운전자격확</u>

	<u>인시스템 이용 신청 및 운전자</u> <u>격확인시스템 이용 실적 제출</u> <u>등 업무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u> <u>스인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u> <u>다.</u>
--	--